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83 호

2002 년 11 월 15 일 금 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55호(동부초교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09호(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2호(적치물등의 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5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7호(옥외광고업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9호(소유사실확인원예따른관계공부열람및
이의신청공고(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23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
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공고)-----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24호(공사견적입찰공고(전자입찰))----- 2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55호

동부초교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부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건고 제561호 '92.10.23)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인고 제93-138호 '93.10.25)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99-22호 '99.2.10),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제01-40호 '0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02-16호 '02.3.5)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1·2·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만수3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2. 11.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동부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109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지구지정 면적(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부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4,669	감108	54,561	'93 10.25	

▶ 지구지정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동부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변경(감:108m ²) - 당초 : 54,669m ² - 변경 : 54,561m ²	향촌지구 지구경계와 중복결정에 따른 면적 제척 만수동 109-321번지(A=108m ²)

2. 사업기간 : '93. 10 ~ '04. 12. 31(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변경없음)

4.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내용

1). 개량방식 : 현지개량방식(변경없음)

2). 토치이용계획(변경)

구 분	총계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주택용지	소계	도로	주차장	공 원	학교용지	종교용지
기 정	54,669	28,314	28,314	26,355	10,093	932	744	11,888	2,698
	100%	51.8%	51.8%	48.2%	18.5%	1.7%	1.4%	21.7%	4.9%
변 경	54,561 (감108)	28,042 (감273)	28,042 (감273)	26,519 (증164)	10,093 (-)	1,137 (증205)	703 (감41)	11,888 (-)	2,698 (-)
	100%	51.4%	51.4%	48.6%	18.5%	2.1%	1.4%	21.7%	4.9%

3).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도로(소로)결정 조서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303번지 일원	246	감108	138	'01. 09.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322번지 일원	181	-	181	'01. 09.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317번지 일원	227	-	227	'01. 09.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385번지 일원	99	-	99	'02. 03.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467번지 일원	54	-	54	'02. 03.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170번지 일원	27	-	27	'02. 03. 05	
기정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09-168번지 일원	98	-	98	'02. 03. 05	
신설		노외 주차장	만수3동 111-352번지 일원	-	증313	3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노외주차장)	면적변경(감:108m ²) - 당초 : 246m ² - 변경 : 138m ²	향촌지구 지구경계와 중복결정에 따른 면적 제척 만수동 109-321번지(A=108m ²)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동부초교 1호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3동 111-185번지 일원	266	-	266	'01. 09.05	
변경		동부초교 1호공원	쌈지 공원	만수3동 111-185번지 일원	266	-	266		시설의세분 변경
기정		동부초교 2호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3동 111-452번지 일원	177	-	177	'01. 09.05	
변경		동부초교 2호공원	쌈지 공원	만수3동 111-452번지 일원	177	-	177		시설의세분 변경
기정		동부초교 3호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3동 111-218번지 일원	232	-	232	'02. 03.05	
변경		동부초교 3호공원	쌈지 공원	만수3동 111-218번지 일원	232	-	232		시설의세분 변경
기정		동부초교 4호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3동 111-451번지 일원	28	-	28	'02. 03.05	
변경		동부초교 5호공원	쌈지 공원	만수3동 111-451번지 일원	28	-	28		시설의세분 변경
기정		동부초교 5호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3동 111-149번지 일원	41	-	41	'01. 03.05	
폐지		-	-	-	41	감41	-		토지이용 계획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동부초교 1·2·3·4호공원	시설의세분 변경 당초 : 어린이공원 변경 : 쌈지공원	공원조성 부지면적 협소로 인하여 쌈지공원으로 변경 시행
	동부초교 5호공원	토지이용계획변경	공원조성 부지면적 협소로 인하여 주택개량 유도

5.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사유

- 지구내 다세대 노후·불량건축물 및 나대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여 동지역내 다세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 결정된 공원의 시설의 세분의 변경(어린이공원→쌈지공원) 및 공원 폐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 상기 사항 이외는 변경 없음

6.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수립 지구의 토지(사용 또는 수용할) 조서

- 만수3동 111-352, 만수3동 109-366번지에 편입·저촉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함

7.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수립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09호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2001. 10. 17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1-182호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득한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 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변경)되었기,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등에게 환지에정지(변경)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며, 종전의 토지 및 당초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3. 환지에정지(변경)지정에 따른 환지 예정지의 사용은 대지 정지공사의 완료 및 사업시행상의 장애 요인이 소멸될 경우에 한하여 부여(환지에정지 사용허가)합니다.
4. 환지에정지(변경)지정에 대한 관련도서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 453-2693)에 비치하고 환지에정지 증명원은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합니다.
5. 환지에정지(변경) 지정 내용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되나, 미 수령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2. 1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2호

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도시계획법 제50조(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규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제반규정에 의거 강제철거하고 적치물을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오니 해당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기간내 해당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시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7(미반환 적치물등의 귀속)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02. 11.11 ~ 2002. 11. 24(14일간)
2. 적치물 귀속처리일 : 2002.11.24일부터 3개월 경과후
3. 적치물귀속처리내용 : 폐기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상 : [붙임] 참조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상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량	보관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비고
1	목재의자	197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도시계획도 로 상 위법 건축물
2	유리장식장	2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3	서 랫 장	8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4	책 장	2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5	책상뚜껑	24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6	식 탁	14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7	식품운반대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8	포장마차용 탁 자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9	의자받침	3상자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0	석유난로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1	냉 장 고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2	사무용책상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3	쇼 파	4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4	컴 퓨 터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5	선 풍 기	1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16	목재류 의자등 부품류(미조립)	다수	2002.7.16	남동구청 (보관창고)	논현동33-34	우홍환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 - 51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300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 공고합니다.

2002. 11. 14.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1. 지정기간 : 2002년 11월 20일 ~ 2004년 11월 30일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일부지역 6,590.27㎢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2.7.24개정) 별표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및 경기도 광주시 · 양평군을 대상으로 하되,
 - 위 행정구역중 2002. 10. 31.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당초허가구역 지정 내용에 따르도록 함
3.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

구 분	지 역	면 적
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500㎡초과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	1,000㎡초과
	임야	2,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초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7호

옥외광고업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옥외광고업 영업폐쇄
2. 당사자 : 대흥기획외22개업소(별첨내역)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옥외광고업 무단폐업, 이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옥외광고업 영업폐쇄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4조(영업정지등), 제15조(청문)
6. 청 문
 - 기관명 : 남동구청 건설과(담당자 : 유환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453-2560)
 - 일 시 : 2002년 12월 5일 14시 00분(부터)
 - 주재자 : 건설과장 전인수
7.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내용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453-2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 11.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청 문 대 상 업 소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4-127	대흥기획	신인철	만수동856-11	영업폐쇄	무단폐업,이전
4-139	준광고기획	김학준	구월동1175-1	“	“
4-146	그린월드디자인	이순덕	구월동1121-7	“	“
4-151	대성광고기획	곽기호	간석동442-7	“	“
4-155	대성광고	최용오	만수동1023-3	“	“
4-159	한솔광고	박한모	구월동1092	“	“
4-193	성창광고	윤성옥	만수948-7	“	“
4-199	제일기획	김석신	구월동1294-5	“	“
4-226	원광고기획	황해선	만수동898-12	“	“
4-237	진현기획	김영선	구월동1295-5	“	“
4-243	무지개광고	김길웅	만수동102-59	“	“
4-250	미르디자인	정우진	고잔동631	“	“
4-254	한울종합광고	정진채	논현동449-2 남동공단28-3L	“	“
4-258	하나종합광고	유용운	구월동1116-5	“	“
4-263	삼구기획	임춘근	남촌동486-3	“	“
4-264	정종합광고	이정학	구월동1277-17	“	“
4-269	성진광고	유형도	간석동768-8	“	“
4-274	도하현수막	이창재	만수동896-22	“	“
4-285	연합광고	김재정	구월동1163-13	“	“
4-289	지혜광고	안병직	구월동1185-4	“	“
4-298	종합광고우성	한옥수	구월동1352	“	“
4-326	(주)에이에스텍	김기웅	고잔동700-4 125-15L	“	“
4-334	이스디자인	조용철	구월동1119-2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19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2.11.15 ~ 12.14(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2.12.14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9)

2002. 11.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상액산정조서(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규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논현동	411-52	상가	브릭스레트	26.68	신은철	남동 논현동 411-52	
2	논현동	411-18	가옥 화장실.광 창고	브릭기와 브릭스라브 브릭스레트	159.39 4.81 12.5	조용신	남동 논현동 411-18	
3	논현동	240	계사및사무실1 가옥 주방 계사2 계사3 계사4 계사5 계사6 도축장7 계사8 계사9 계사10 계사11 계사12 계사13 계사14 계사15 건사16 창고18 가옥 창고19 사료저장소20 건사21 건사22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목조천막 대나무보온덮개 쇠파이프보온덮개 쇠파이프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목조비닐 목조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쇠파이프보온덮개 쇠파이프보온덮개 쇠파이프보온덮개 목조스레트 대나무보온덮개 대나무보온덮개 목조스레트 쇠파이프양철 목조스레트 목조합석	28.5 34 17.5 87 94 92.5 92.5 92.5 9.6 116 116 83.25 83.25 83.25 97.5 97.5 40 11 25 30 4.4 17.5 22 11.6	손덕순	남동 논현동 323	
4	논현동	323	가옥 가옥 부엌 창고.보일러실	브릭기와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34.75 35 7.65 12.5	손덕순	남동 논현동 323	
5	논현동	366-1	가옥1 가옥2 연탄광 화장실 보일러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56.64 35.34 8.96 1.5식 6.16	박신의	남동 만수6동 1049 담방마을 102/1206	
6	논현동	366-1	가옥 구점포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122.83 42.92	박신원	경기 안산시 본오동 888-13.401호	
7	논현동	366-1	가옥1 가옥2 현관 구방 창고겸보일러실 화장실 창고 화장실 창고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목조	64.76 22.78 24.6 9 5.46 1.2식 10.4 2.4식 2.4	박신행	남동 논현동 366-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2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공고

제 1 조 (目的) 이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확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기호와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남동공단 근린공원, 구월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말하며, 육상경기장, 축구장, 본부식, 스탠드(벤치)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개방송,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기타 협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운동장 및 부대 시설전체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운동장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 일수 있다

제 4 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구청장은 운동장 사용을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1. 남동구 경.조 행사 등
2. 남동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남동구 관내에 학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 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행사

제 5 조 (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운동장의 활용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용시간) ① 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조기 : 05:00 ~ 08:00 까지 (동계06:00 ~ 09:00까지)
주간 : 08:00 ~ 19:00 까지 (동계09:00 ~ 18:00까지)
야간 : 19:00 ~ 23:00 까지 (동계18:00 ~ 23:00까지)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 7 조 (사용료)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별표 1. 2 와 같다

③ 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 8 조 (사용료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민을 위한 경. 조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 9 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전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우천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10 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운동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의 처분에 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12 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3조(운동장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명을 위하여 별지 1. 2 호의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 14 조 (위탁관리) ① 운동장의 운영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구청장”이라)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동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운동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도 # 1】

남동구 공원 운동장 사용료징수(안)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 휴 일	평 일	공 휴 일	
주 간	60,000	80,000	120,000	150,000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별도 # 2】

부대시설 사용료징수(안)

사용구분	사 용 료 (평 일)	비 고
전기및방송시설	30,000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별도 # 3】

오전, 오후 사용료징수(안)

사용구분	사 용 료 (평 일)	사 용 료 (공휴일)	비 고
2 시간 이상사용(오전, 오후)	30,000	40,000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별지 1호서식)

공원운동장사용(시설)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공원운동장명				
사용시설물				
사용목적				
사용 일시	200 년 월 일 : 부 터			
	200 년 월 일 : 까 지			
사용인원				
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수거하여 남동구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 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 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단, 천재지변은 제외) 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담당자	담당	과장	결 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2호서식)

공원운동장사용(시설)허가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공원운동장명				
사용시설물				
사용목적				
사용 일시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 부터				
: 까 지				
사용인원				
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수거하여 남동구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 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 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단, 천재지변은 제외) 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공원운동장사용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200 년도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납 부 외무자	성명	
	주소	
사용료금액		
사용운동장	월 일 시부터 까지	
위 사용료는 운동장사용료 제7조 규정 에 의거 200 년 월 일 까지 납부 구 구급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공원운동장사용납부서

(수납 은행보편용)

제 호	회계년도	200 년도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납 부 외무자	성명	
	주소	
사용료 금액		
사용 운동장	월 일 시부터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일부인		
(인)		

공원운동장사용영수필지서

(남동구청보편용)

제 호	회계년도	200 년도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납 부 외무자	성명	
	주소	
사용료 금액		
사용 운동장	월 일 시부터 까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일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원운동장사용납부통지서

(개인통지영수증)

제 호	회계년도	200 년도
세입과목	공원운동장사용료	
납 부 외무자	성명	
	주소	
사용료 금액		
사용 운동장	월 일 시부터 까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524호

공사견적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월2동7-21번지일원공영주차장건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 설계금액 : 85,522,000원(관급 8,311,000원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2.11.15(금) 오전09:00~2002.11. 21(목) 오후18:00
-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2.11.22(금) 10: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에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2.11.14(목)~2002.11.21(목) [남동구청 교통과]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업체이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증 반드시 2가지 면허(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업)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설계금액중 관급액을 제외한 기초금액(77,211,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교통과(453-276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의할 곳 :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관리팀(☎453-2763, 담당자 : 나민환)

2002. 11. 14.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분임경리관

